

(붙임) 공개내용 및 비공개 사유

1. 개요

가. 미투 발생 학교명 및 발생 시기(공개)

- 대명여자고등학교(2018.6.1.)
- 사하중학교(2018.9.12.)
- 선화여자중학교(2018.9.10.)
- 해운대여자중학교(2018.12.10.)
- 문화여자고등학교(2018.9.11.)

나.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 비공개

다. 학교별 피해 학생 수 : 비공개

라. 피해사례(사건내용) :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가. 교육청 담당부서

- 총괄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중학교 담당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서부,남부,해운대)

나.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분리

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 비공개

라.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 보고서(원본) : 비공개

마.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바. 2차 가해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 비공개

사.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 비공개

아.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방지 대책 : 비공개

자.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경찰수사 의뢰: 모든 사안은 수사의뢰함

- 형사처벌 등 : 비공개

차.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 비공개

3. 비공개 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준수 의무)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수사 진행 사항)

유의사항

0.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사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1.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2. 우송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3.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